의안 번 호

1569

## 【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]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9. 7. 2.(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7. 2.(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7. 11.(목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경제국장 김영성)

#### 가. 제안이유

- 2019. 7. 1.부터 「장애인복지법」의 개정으로 '장애등급'이 폐지되고, '장애정도'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
- O 종전의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을 인용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괄 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장애등급→ 장애정도
-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4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→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O 개정대상 조례
  -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(안 제1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컨벤션 사용에 관한 조례(안 제2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(안 제3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(안 제4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(안 제5조)
  - 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(안 제6조)

6 (제217회-본회의제2차부록)

#### 다. 근거법규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

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「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」 등 6개 조례로서 상위법령인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편의 지원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
- O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근 거 법

#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 장애인.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자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 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#### ② 삭제
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(査定)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.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 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「의료 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,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, 등록 증의 발급,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, 장애판정위원회, 진료에

#### 8 (제217회-본회의제2차부록)

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